

## II. 주요 관세행정 동향

### 1 국내 관세규정 변화 안내

#### □ 철강제 선상수출신고 대상 추가(수출 및 반송 고시 개정 5/30) [철강](#)

- (배경) 미국 관세조치 등 불확실한 여건을 반영, 철강업계 수출지원을 위해 벌크선에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를 '선상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

\* 수출수리 후 선적 원칙에 예외로 물품 특성을 고려해 선적 후 수출신고를 허용하는 제도

- (내용) 국내 제조하여 벌크선으로 적재·수출되는 철강제 관류에 대해 **체선료 절감, 적재기간 단축** 등 지원을 위한 선상수출신고 대상 확대(§38①4호)

※ (기존) 산물·광산물, 신선도 유지 수산물, Ro-Ro선 적재 신품차량, HS 제72류 철강류  
(추가) HS 제7304호 ~ 제7306호에 해당하는 철강제 관, 파이프, 관류 등

#### □ 원산지 간이확인물품·사전심사 대상 확대 등(FTA고시 개정 6/30) [화장품](#) [ALL](#)

- (간이확인 물품확대) 한류(K-wave) 접목 수출 유망품목의 수출지원을 위해 **화장품류 6개\*** 등 총 17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 신규 지정, 적용 가능 신규 협정 확대(한-필리핀 신규발효 '24.12.31.)

\* 립스틱·아이섀도·마스카라·헤어래커·가향한 목욕용 염·마스크 팩 등

#### < 원산지 간이확인물품 >

- ▶ (개념) C/O발급 또는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시 '원산지소명서 및 관련 증빙자료(8종)' 대신 '국내제조확인서(1종)'으로 간이하게 제출할 수 있는 물품
- ▶ (대상) [개정 前] 326개 품목 → [개정 後] 343개 품목

- (사전심사 대상확대) 원산지 사전심사 활성화와 신청인 편의 제고를 위해 원산지사전심사 신청서류를 수입자를 통하지 않고 상대국 수출자·생산자 직접 제출허용, 사전심사 대상 협정을 모든 협정으로 확대

< 원산지 사전심사제도 >

- ▶ (개념) 원산지 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수입자의 신청에 의해 수입신고 이전에 관세청장이 심사 하여 결과를 회신해 주는 제도
- ▶ (대상) [개정 前] 사전심사 규정한 협정에 한함 → [개정 後] 모든 협정(관세법§31① 개정)

- (현지확인 절차 개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한 현지 확인 시작 5일 전 통지(종전 전일까지 통지)

□ '무계목강관' 유통이력 신고물품 신규지정(유통이력 고시 행정예고) [철강](#)

- (배경) 수입 무계목강관\*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산업 전반에 고온·고압의 극한 환경에서 사용되므로 높은 신뢰성과 안정성 요구

\* 이음매 없는 강관(Seamless pipe)으로 용접관에 비해 내구성이 우수하고 고가

\*\* 22년~24년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 16건, 위반금액 151억원

- (내용) 관계부처합동 「철강산업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 과제로 '유통이력 신고물품 확대'가 채택('25. 3. 19.)되었으며, 관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협의를 거쳐 '무계목강관' 신규 지정('25.10월 시행예정)

< 유통이력신고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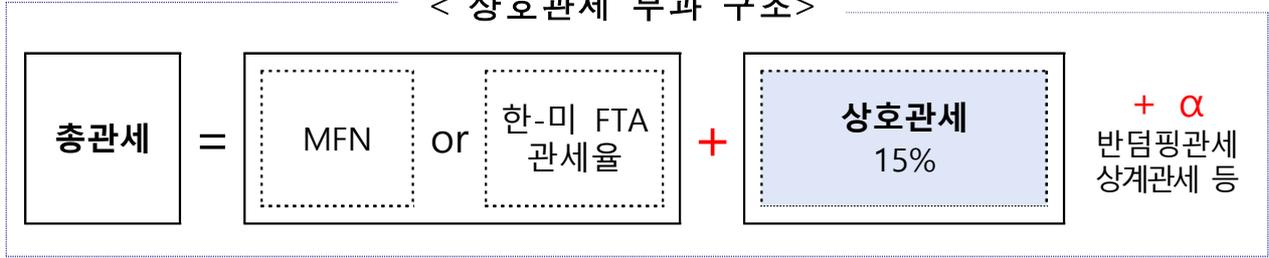
- ▶ (개념)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자, 유통업자, 최종 판매자까지 통관·유통 내역 및 경로를 추적·관리하는 제도(공산품 관세청, 농산물-농식품부, 수산물-해수부 관리)
- ▶ (장점) 수입 단계부터 유통이력 신고의무를 통지하고, 현장점검 및 홍보를 통해 국내 유통이력을 관리함으로써 원산지 둔갑 및 불법 용도전환을 원천 차단

② 해외 관세동향 변화 안내

□ 미국 조정된 상호관세 행정명령 발표(8.7)

- (상호관세 부과) 미국 정부는 8월 7일을 기준으로 한국산 수입물품에 대해 기본세율(최혜국대우 관세율, Most-favored nation(MFN))이나 FTA 관세율에 추가 부과하는 방식으로 상호관세 15% 부과 결정

< 상호관세 부과 구조 >



- (우회수입 제재)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회피를 위한 우회수입 적발시 제재방안을 공표하고 6개월마다 우회수입이 적발된 국가 및 시설명단 공표 예정(공공조달, 국가 안보 등에 반영)

< 우회수입 적발시 제재방안 >

- ① 국가별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아닌 40% 추가 관세율 부과
- ② 벌금 또는 과태료(19 U.S.C. 1952에 따라 부과되는 것 포함)
  - \* 밀수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 사기, 중과실 또는 과실로 구분하여 처벌수위 규정(벌금형)
- ③ 관세, 수수료, 세금, 추징금

□ 미국 파생제품 품목관세 부과·확대

- (부과대상)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407개(8.18), 구리 파생제품 80개(8.1)에 50% 관세를 부과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인 화장품, 냉장·냉동고, 변압기, 자동차 부품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

\* 수입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규정

※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추가 관세 부과 현황

- (03.12) 철강·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에 대한 추가 25% 관세 시행 (무역확장법 제232조)
- (04.04) 알루미늄 파생제품 3개 품목(맥주캔 및 빈 알루미늄 캔) 추가
- (06.03) 미 철강 등 관세율 25%에서 50%로 상향
- (06.23) 철강 파생제품 11개 품목(냉장·냉동고, 세탁기, 건조기등 가전제품) 추가

- (부과방법) 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그 파생제품에 대상물질의 함량 가치에만 50% 품목별 관세, 비함량부분은 상호관세 부과

철강·구리 함량 가치 ⇒ (MFN 또는 한-미 FTA 세율) + **추가 50% 관세**

非철강·구리 함량 가치 ⇒ (MFN 또는 한-미 FTA 세율) + **상호관세 15%**

- 자동차부품과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 세번 중복시 자동차 부품관세 25% 우선적용\*

\* 미국CBP 공지한 우선적용 순서(CSMS # 65236574)에 따라 관세 부과  
1순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  
2순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알루미늄 및 그 파생제품 관세  
3순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및 그 파생제품 관세

## □ 미국 소액물품 관세면세 적용 중단(8.29)

○ (배경)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800달러 이하 소액물품 관세 면세 적용 중단 행정명령 발표(8.29. 시행)

※ 개인간 선물 100달러, 여행자 휴대품 200달러 면세 유지  
기존 조치 확대 : (4.2) 중국발 소액 소포 면세 혜택 중단 ⇒ (8.29) 전세계

○ (부과방법) Pay.gov 웹사이트에 국제우편물 관세 제출서류(worksheet)와 전용 페이지가 안내되며, 모든 대상물품에 대해 동 서류 작성 및 제출 필요

- 운송업체 또는 적격업체\*는 국제우편물 도착 전 미 CBP에 통지해야 하고, 반입일 다음 달 7번째 날(영업일 기준)까지 관세를 납부해야 함

\* 국제우편물 관세납무를 대납할 수 있는 적격업체로 美CBP에 공지됨

방법 1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실효 관세율(한국의 경우 15%)과 동일한 관세율을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이 포함된 각 우편물의 가치(value)에 대해 산정
방법 2	물품의 원산지 국가에 적용되는 IEEPA 실효관세율을 기준으로, 소비용으로 반입된 상품이 포함된 각 우편물에 대해 고정세액(종량제) 산정 ① 원산지가 IEEPA 실효관세율 16% 미만 국가(한국) : 품목당 80달러 ② 원산지가 IEEPA 실효관세율 16%~25% 국가 : 품목당 160달러 ③ 원산지가 IEEPA 유효관세율 25% 초과 국가 : 품목당 200달러

※ 방법2는 6개월간만 선택 가능, 26.2.28.부터 방법1에 의해서만 관세 납부해야함

## □ 미국 강제노동 방지법 통관보류 사례

- H사가 미국으로 수출한 태양광 셀에 대하여 공급망 일부가 UFLPA 제재 대상 중국 기업과 연계 가능성이 제기되어 통관 보류('25.6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 ▶ (개념) 신장위구르 지역에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미국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률로, '22.6월부터 시행
- ▶ (특징) 수입업체에 강제노동 무관성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과

## ③ 수출지원 관세정책 안내

### □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 책자 배포

- (배경) 품목별로 명확한 기준이 공시되는 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모호한 '비특혜원산지 기준(실질적 변형)'과 관련하여 對美 수출기업의 대응 지원
- (내용) 명시된 기준 없이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에 따르고 있는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대하여 실제 판정사례 중심으로 주요 수출산업별\* 대응 체크포인트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배포

\* ①철강제품, ②자동차 부품, ③식품류, ④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 □ 미국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 배포(6.5)

- (배경) 미국 정부(CBP)의 수입물품 원산지·품목분류·과세가격 등에 대한 사전심사제도(e-Ruling)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
- (내용) 미국의 신규 관세부과 확대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품목분류 등 판정에 대한 수출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CBP 사전심사제도 신청 가이드북(동영상 포함) 배포(관세청 누리집)

## □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 발표(K-역직구 지원, 8.28)

- (배경) 전자상거래 수출업체(역직구 수출기업) 지원 정책
- (내용) 우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지원을 위해 ①수출신고 체계 개선, ②소상공인·수출 초보 기업 해외 진출 지원, ③해외 통관 환경 대응 및 수출 사후 지원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한 10대 과제\* 발표

- \* ①간이수출신고 기준상향, ②우편물 활용 수출지원, ③확정가격 신고기한 연장, ④수출목록 변환 신고 개선, ⑤소상공인 과태료 경감, ⑥이커머스 플랫폼 지원, ⑦수출 100대 품목 HSK 제공, ⑧해외통관 정보 제공, ⑨일본 해상수출 활성화, ⑩해외 반품 물품 처리 개선

## □ 미국 파생제품 및 상호관세 적용 제외물품 연계표 제공

- (배경) 對美 수출기업 현지 관세부과 대응 지원
- (내용) 미국정부가 공표하는 품목별 관세 부과 품목(철강, 알루미늄, 구리 및 파생제품)과 상호관세 적용 제외대상 품목과 대응되는 국내 품목분류 세번(HS, Harmonized System) 정보 제공(관세청 누리집)

## ④ 주요 통관애로 해소 사례

### □ 품목분류 이견에 대한 해외 분쟁 해소

- A社가 ○○로 수출하는 Motor & Coupler Assy 제품에 대해 해당국 세관의 품목분류 고세율 적용 및 조사 시행으로 장기간 통관보류
  - 관세청 HS국제분쟁신고센터(관세평가분류원) 업체 지원 요청접수, 해외 네트워크 및 관세관을 통해 해당 세관에 적극 대응하여 관세 등 약 180억원 상당 기업 비용 절감

## □ 전략물자 통제대상 여부에 대한 수출 제한 해소

- B社가 □□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국 수출업체에게 발주한 파이프 등 공장건설 자재가 수출국가인 ◇◇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전략물자 통제 대상에 해당 된다는 이유로 수출이 제한받는 사태 발생
  - 해외 관세관을 통해 현지 지방 세관과 전략물자 수출 허가를 관할하고 있는 상위 기관에 해당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되지 않음을 적극 설명하고 관련 허가서류 발급을 지원하여 약 10억원 상당 수출물품에 대한 수출제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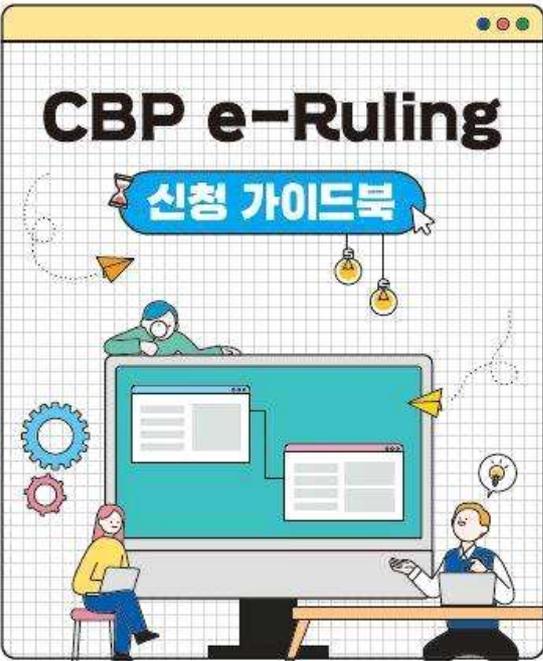
## □ 현지진출 우리기업에 대한 관세조사 대응 지원

- C社가 □□국 현지판매 자회사로 수출하는 전자제품과 관련하여 현지 법인에 하자보증비를 부담시키고 저가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고강도 관세 조사 진행
  - 해외 관세관의 현지 세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 우리기업의 과세가격 적정성을 적극 대변하여 관세 49억원, 부가세 393억원 총 약 442억원 (추징대상 금액) 상당의 기업부담 해소

1.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파일제공)



## 2. 미국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파일제공)

 <p style="text-align: center;"><b>CBP e-Ruling</b> <b>신청 가이드북</b></p> <p style="text-align: center;">한국원산지정보원 Korea Institute of Origin Information</p> <p style="text-align: center;">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p>	<h3 style="text-align: right;">CONTENTS</h3> <p><b>PART I 미국 사전심사 제도</b> <span style="float: right;">6</sp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심사(Advance Ruling)란?</li> <li>▶ 사전심사 종류</li> <li>▶ 신청방법</li> <li>▶ 신청인</li> <li>▶ 신청시기</li> <li>▶ 처리기간</li> <li>▶ 유효기간</li> <li>▶ 효력 및 적용 범위</li> <li>▶ 신청 수수료</li> <li>▶ 신청 시 필수 정보</li> <li>▶ 사전심사 결정에 불행하지 않는 경우</li> </ul> <p><b>PART II e-Ruling 신청</b> <span style="float: right;">12</sp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Ruling이란?</li> <li>▶ 신청 방법</li> <li>▶ 신청 종류 및 작성 정보</li> <li>▶ 처리기간</li> <li>▶ 심사 신청 반려 사유</li> <li>▶ 신청 방법</li> </ul> <p><b>PART III 사전심사 신청서의 작성 요령</b> <span style="float: right;">27</sp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문 (Preamble)</li> <li>▶ 사실관계 (Facts)</li> <li>▶ 논의 및(항)의 설명 (Discussion and Analysis)</li> <li>▶ 신청인의 의견과 결론 (Opinion / Conclusion)</li> </ul> <p><b>PART IV 부록</b> <span style="float: right;">31</spa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사 결정서에 예시</li> <li>▶ 유용한 링크</li> </ul>				
<p><b>PART I 미국 사전심사 제도</b></p> <p>☑ 사전심사(Advance Ruling)란?</p> <p>· 미국 연방규정집 19 CFR § 177 및 기타 관련 규정에서 따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규정 및 판정식 (RR: Regulation and Ruling)이 발행하는 구속력을 갖춘 서면 결정</p> <p><b>참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P는 발급된 모든 사전심사 결정문을 온라인 관세 시스템인 CROSS*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li> <li>- CROSS에서 결정문 번호 또는 품목 명칭 등을 검색하여 유사 품목에 대한 참조 사례 결정문 조회 가능 * 주소: <a href="https://iis.dhs.gov/cross">https://iis.dhs.gov/cross</a></li> <li>- 신청인이 영 19 CFR Part 177.200(7)에 근거하여 "일반의 비밀거래 (Confidential treatment)"를 요청한 경우, 결정문 상에서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나, 이 경우 본인의 기밀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음</li> <li>- 비공개 처리된 사항은 결정문 상에 공개되지 않으므로 기업들은 참조 사례를 분석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6 —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p>	<p><b>PART II e-Ruling 신청</b></p> <p>☑ e-Ruling이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을 통해 NCSDB에 사전심사용 신청할 수 있도록 구축한 시스템</li> </ul> <p>☑ 접속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RL: 접속: <a href="https://enrulings.cbp.gov">https://enrulings.cbp.gov</a></li> </ul> <p>☑ 신청 종류 및 작성 정보</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품목분류 (Tariff Classific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당시 상품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설명</li> <li>- 구성 재료</li> <li>- 이후 내역서의 주요 품목</li> <li>- 상업적 일반적 또는 기술적 명칭</li> <li>- 제품 설명서 스케치, 사진, 제조 공정도 등</li> <li>- 화학 분석서, CAS 번호 등</li> <li>- 19 CFR § 141.89에 따른 특정 승장 요건(있는 경우)</li> <li>- 기타 분류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li> </ul>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원산지 (Country of Origi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원재료의 생산 또는 채취 국가</li> <li>- 생산의 각 단계가 수행된 국가</li> <li>- 구성 부품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각 부품이 최종 제품에서 수행하는 역할</li> <li>- 19 CFR, § 102의 원산지표시 규칙(Marketing Rules)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각 구성 부품 및 최종 제품의 HTSUS 분류 번호</li> </ul> </td> </tr> <tr>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and Mark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및 포장의 표시 방식에 대한 상세 설명</li> <li>- 상품에 부착된 라벨 및 포장 스티커를 보여주는 일러스트 및 사진</li> <li>- 원산지표시 외의 다른 라벨링/ 포장 내용도 함께 제시</li> <li>- 수입 후 상품의 사용 방식 또는 판매 방식에 대한 설명</li> </ul> </td> <td style="width: 50%;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b>무역 프로그램 및 협정 (Trade Program or Agree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관청에 특화된 상세 생산 정보</li> <li>- 각 생산국에서 발행된 비공통 정보 등</li> </ul> </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12 — CBP e-Ruling 신청 가이드북</p>	<p style="text-align: center;"><b>품목분류 (Tariff Classific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당시 상품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설명</li> <li>- 구성 재료</li> <li>- 이후 내역서의 주요 품목</li> <li>- 상업적 일반적 또는 기술적 명칭</li> <li>- 제품 설명서 스케치, 사진, 제조 공정도 등</li> <li>- 화학 분석서, CAS 번호 등</li> <li>- 19 CFR § 141.89에 따른 특정 승장 요건(있는 경우)</li> <li>- 기타 분류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원산지 (Country of Origi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원재료의 생산 또는 채취 국가</li> <li>- 생산의 각 단계가 수행된 국가</li> <li>- 구성 부품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각 부품이 최종 제품에서 수행하는 역할</li> <li>- 19 CFR, § 102의 원산지표시 규칙(Marketing Rules)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각 구성 부품 및 최종 제품의 HTSUS 분류 번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and Mark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및 포장의 표시 방식에 대한 상세 설명</li> <li>- 상품에 부착된 라벨 및 포장 스티커를 보여주는 일러스트 및 사진</li> <li>- 원산지표시 외의 다른 라벨링/ 포장 내용도 함께 제시</li> <li>- 수입 후 상품의 사용 방식 또는 판매 방식에 대한 설명</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무역 프로그램 및 협정 (Trade Program or Agree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관청에 특화된 상세 생산 정보</li> <li>- 각 생산국에서 발행된 비공통 정보 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품목분류 (Tariff Classificatio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 당시 상품에 대한 완전하고 상세한 설명</li> <li>- 구성 재료</li> <li>- 이후 내역서의 주요 품목</li> <li>- 상업적 일반적 또는 기술적 명칭</li> <li>- 제품 설명서 스케치, 사진, 제조 공정도 등</li> <li>- 화학 분석서, CAS 번호 등</li> <li>- 19 CFR § 141.89에 따른 특정 승장 요건(있는 경우)</li> <li>- 기타 분류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원산지 (Country of Origin)</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원재료의 생산 또는 채취 국가</li> <li>- 생산의 각 단계가 수행된 국가</li> <li>- 구성 부품에 대한 상세 설명 및 각 부품이 최종 제품에서 수행하는 역할</li> <li>- 19 CFR, § 102의 원산지표시 규칙(Marketing Rules)에 따라 원산지를 판단하는 경우, 각 구성 부품 및 최종 제품의 HTSUS 분류 번호</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원산지표시 (Country of Origin and Marking)</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품 및 포장의 표시 방식에 대한 상세 설명</li> <li>- 상품에 부착된 라벨 및 포장 스티커를 보여주는 일러스트 및 사진</li> <li>- 원산지표시 외의 다른 라벨링/ 포장 내용도 함께 제시</li> <li>- 수입 후 상품의 사용 방식 또는 판매 방식에 대한 설명</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무역 프로그램 및 협정 (Trade Program or Agreemen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산지관청에 특화된 상세 생산 정보</li> <li>- 각 생산국에서 발행된 비공통 정보 등</li> </ul>				

### 3.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파일제공)

정책브랜드



# 수출 e-로움

수출과정의 수월함 + 전자상거래 e-commerce + 기업에 돌아가는 이로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수출 편의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관세행정방향을 담고 있다.



<p><b>핵심분야 I</b></p> <p>1 간이스출신고 기준금액상향</p> 	<p><b>핵심분야 I</b></p> <p>2 우편물 목록 수출관리·영세율 적용 지원</p> 	<p><b>핵심분야 I</b></p> <p>3 풀필먼트 수출 확정가격 신고 기한 연장</p> 
<p><b>핵심분야 I</b></p> <p>4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 기능·이용자 편의 개선</p> 	 <p>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p> <h2>수출 e로움</h2> 	<p><b>핵심분야 II</b></p> <p>5 전자상거래 수출 소상공인 과태료 경감</p> 
<p><b>핵심분야 II</b></p> <p>6 이커머스 플랫폼 협력·통관 혜택 발굴</p> 	<p><b>핵심분야 II</b></p> <p>9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 활용 지원</p> 	<p><b>핵심분야 II</b></p> <p>10 해외 반품 물품 처리 절차 개선</p> 

## 4.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파일제공)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즉시 배포 2025. 8. 22.(금) 09:00

### 관세청, 미 철강·알루미늄 관세 추가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에어컨, 변압기, 절연전선, 트랙터 등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품목 428개 추가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관세 대상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8월 22일(금)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FTA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 이는 미국 정부가 8월 18일(현지시각)부터 추가 관세 부과를 시행함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 관세 대상이 아니었던 품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 이번 조치로 추가된 관세 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 엔진과 부분품(피스톤식 내연기관, 터빈, 그 밖의 엔진), 에어컨과 부분품, 냉장고·냉동고와 부분품, 권양용·취급용 기계와 부분품(잭, 호이스트, 타워크레인, 선박데크, 엘리베이터 등), 중장비와 부분품(포크리프트트럭, 작업트럭, 불도저, 셔블 등), 베어링과 베어링 하우징, 동력전달장치(샤프트, 기어, 기어박스 등), 변압기와 부분품, 절연전선, 철도 차량과 부분품, 트랙터와 부분품, 특정 차량(기중기차, 이동진료소, 이동방사선차, 장갑차, 모터사이클, 캠핑용 차량 등), 화장품 용기 등이 신규로 포함되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별첨. 미 관세부과 대상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 미-한 관세율표 연계표

담당 부서	심사국 세원심사과	책임자	과 장	오현진 (042-481-7870)
		담당자	사무관	정상우 (042-481-7642)

